

1. 住宅建設基準 등에 관한 規則

建設部令 第479號. 1991年 4月 12日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의 특례)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치수 및 기준척도등) 영 제13조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는 별표 2와 같다.

제 4 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3인(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인 이하의 단수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인(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제 5 조(마감재료) 영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각 부위별 마감재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 6 조(주택단지안의 도로)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의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포장하여야 하고, 그 보도는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되, 보도블록·석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8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하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리는 노면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수해방지)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의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탈면과 건축물 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들 것.

제 8 조(안내표지판)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 9 조(쓰레기투입시설)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투입시설의 규

격 및 마감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배관설비) 건축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부엌·욕실 및 변소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제12조(간선시설)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 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위: 미터)

대 지 면 적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2만제곱미터 미만	8 이상
2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2 이상
4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5 이상
8만제곱미터 이상	20 이상

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미터)

대 지 면 적	너비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2만제곱미터 미만	12 이상
2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6 이상
4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20 이상
8만제곱미터 이상	25 이상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 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 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 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공급·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 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3. 전기시설: 매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3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야 한다.

제13조(주택자재산업의 등록신청등)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산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8조제1항제7호에서의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보유명세서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주택자재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자재산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택자재산업자가 영업소소재지를

당해 시·도지사외의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변경후의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변경전의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자등록대장·주택자재품질검사에 관한 서류 기타 당해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서류를 변경후의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증의 재교부) 주택자재생산업자는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주택자재생산업등록대장) 시·도지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다.

제17조(주택자재의 생산기준등) ①주택자재생산업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자체품질관리를 거쳐 별표 6에서 정하는 치수 및 품질에 적합한 주택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표시품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체품질관리시험항목: 치수(허용차 및 결모양을 포함한다)검사와 압축강도시험으로 한다. 다만, 기와의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휨파괴하중시험으로 같음하고, 창호제품의 경우에는 치수검사만 행한다.

2. 자체품질관리시험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주택자재생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품질관리시험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당해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주택자재생산업 실태보고) 시·도지사는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주택자재의 품질검사) 법 제43조 및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행한다.

1.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기에 행하고, 수시검사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품질검사 계획에 따라 주택자재생산업자당 연 2회 이상(시멘트가공제품은 연 4회 이상) 행할 것.
2. 검사시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생산공장 또는 공사현장에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참여하에 채취하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동시에 채취할 것.

제20조(품질검사신청 등) ①검사기관은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료채취증을 당해 주택자재생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증을 받은 주택자재생산업자는 그 교부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품질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주택자재생산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당해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품질검사기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등) ①검사기관은 주택자재의 품질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품질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불합격후 재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주택자재의 품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검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보관하고 매분기별로 그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영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우량주택자재의 인정대상)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자재”라 함은 주택건설의 공업화 또는 새로운 공법의 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자재를 말한다.

제24조(우량주택자재의 인정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내구성 및 기능성이 우수할 것.
2. 대량생산체제에 의한 규격화생산이 가능할 것.
3. 시공성이 양호할 것.
4. 가격이 적정할 것.

제25조(우량주택자재인정신청서 등) ①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다.

②영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매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우량주택자재인정의 표시) 법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인정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

제27조(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 ①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소속 1급 공무원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주택자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다른 법령의 폐지)** 주택건설기

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 3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 제18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②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단서중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 또는 내구성·내식성 등에 있어서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별표 1] 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진입도로

가.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단위: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300세대 미만	6 이상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8 이상
1천세대 이상~2천세대 미만	12 이상
2천세대 이상	15 이상

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너비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12 이상
1천세대 이상~2천세대 미만	16 이상
2천세대 이상	20 이상

2.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너비를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미터)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세대수	도로의 너비
100세대 미만	4 이상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6 이상
500 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8 이상
1천세대 이상	12 이상

3. 주차장(영구임대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 한한다)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1대 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읍·면과 기타지역
1/160	1/180	1/200

4. 1. 및 2. 외의 100세대 이상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비 고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500세대 미만	2천 500세대 이상	
1.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 주민공동시설 • 노인정 • 탁아소 	100㎡ 이상	매세대당 0.4㎡ 이상. 다만, 탁아소는 50㎡에 300세대를 초과하는 매세대당 0.2㎡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더한 면적 이상(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까지로 할 수 있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은 될 수 있는대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설치하고, 각 시설의 규모는 거주자의 인적구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 탁아소에는 유아놀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100㎡ 이상의 옥외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 • 의원 • 구매시설 • 생활시설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1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3. 체육을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등 • 체력단련실등 • 어린이놀이터 	200㎡ 이상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단련실 등 실내운동시설은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또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다.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4. 근린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파출소 (경찰지서를 포함한다.) • 동사무소 • 우체국 	-		3천 내지 4천세대당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공공시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다.
		-		3천 내지 5천세대당 1개소	
		-		3천 내지 6천세대당 1개소	
5. 유치원	-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 비고: 2천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부지를 확보한다.

5. 1. 내지 3. 외의 1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비고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500세대 미만	2천 500세대 이상		
1.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50㎡ 이상	매세대당 0.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은 될 수 있는데로 동일한 건축물안에 사회복지관과 통합하여 설치하고, 각 시설의 규모는 거주자의 인적 구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사회복지관에는 상담실·목욕장·공동작업장·직업훈련소·취업안내소·보건소지소·도서실·청소년교양시설 등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관 	100㎡ 이상	300㎡ 이상 (500세대 이상인 때에는 500㎡ 이상)	1천㎡ 이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1,500㎡ 이상)	2천㎡ 이상 (5천세대 이상인 때에는 3천㎡ 이상)	
2. 주민소득을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공장 	-		상공부장관의 설치계획에 따라 부지를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에 수립대등 인근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국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천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설치계획에 따라 병원부지를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 	-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시설 생활시설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4. 체육을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장등 	200㎡ 이상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력단련실 등 실내 운동시설은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또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다. 5천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설치계획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력단련실등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놀이터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5. 근린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관파출소 (경찰지서를 포함한다) 	-		3천 내지 4천세대당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공공시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무소 	-		3천 내지 5천세대당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체국 	-		3천 내지 6천세대당 1개소		
6. 유치원		-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비고: 2천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외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부지를 확보한다.

[별표 2]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제3조 관련)

구 분	치 수 및 기 준 척 도
1. 거 실	평면 각변의 길이는 3미터(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3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한다.
2. 침 실	평면 각변의 길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30센티미터(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한다.
3. 부엌·식당·욕실 및 변소	평면 각변의 길이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한다. 다만, 욕실 또는 변소로서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유닛·주택용 세면실유닛·주택용 화장실유닛 또는 주택용 욕실유닛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업규격의 정하는 주택용 새니터리유닛의 모듈호칭치수에 의한다.
4. 계단의 너비·계단참의 너비 및 복도의 너비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한다.
5. 승용승강기 및 승강로의 치수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승용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에 의한다.
6. 층높이	2.4미터·2.5미터·2.6미터·2.7미터·2.8미터·2.9미터 또는 3.0미터로 한다.
7.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2미터·2.3미터·2.4미터 또는 2.5미터로 한다.
8. 난간의 높이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한다.
9.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창호부품설치용 개구부의 표준모듈치수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 비교: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척도조정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별표 3]

주택의 각 부위별 마감재료(제5조 관련)

구 분	부 위	마 감 재 료 (다음 재료중에서 선택한다.)
1. 거실·식당	가. 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연성 보드류 • 합판 또는 펄스레트 위 천정지 바름 • 시멘트모르터(제물치장 콘크리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위 페인트칠 또는 천정지 바름 • 회반죽 • 석고프라스터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또는 벽지바름 • 회반죽 • 석고프라스터 • 보드류(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에 한한다. 이하 같다)위 벽지 바름 • 목재널판 • 합성수지제품 • 후로링 보드류 • 아스타일류 • 합성수지바닥재
2. 침 실	가. 반 자 나. 내 벽 다. 결레받이 라. 바 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식당의 재료와 같다. • 시멘트모르터 또는 보드류위 벽지바름 • 목재널판 • 굽도리 돌림 • 장판지 • 합성수지바닥재
3. 현 관	가. 반 자 나. 내 벽 다. 결레받이 라. 바 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식당의 재료와 같다. • 거실·식당의 재료와 같다.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합성수지제품 • 바닥용 타일 • 인조석현장갈기 • 아스타일류
4. 부 욕· 다용도실	가. 반 자 나. 내 벽 다. 결레받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스레트 위 페인트칠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벽타일 • 벽타일

구 분	부 위	마 감 재 료 (다음 재료중에서 선택한다.)
	라. 바 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모르트 위 페인트칠 • 합성수지제품 • 바닥용 타일 • 인조석현장갈기 • 아스타일류 • 시멘트모르터 위 하드너 마감
5. 욕 실	가. 반 자 나. 내 벽 다. 바 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스레트(알루미늄 고정못을 사용하고 줄눈이조이너로 시공한 것을 말한다)위 페인트칠 • 선라이트류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벽타일 • 바닥용 타일
6. 발 코 니	가. 반 자 나. 벽 체 다. 걸레받이 라. 바 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바닥용 타일 • 인조석현장갈기 또는 테라조 • 시멘트모르터 위 하드너마감
7. 계단실·복 도	가. 반 자 나. 벽 체 다. 걸레받이 라. 바 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시멘트모르터 위 페인트칠 • 합성수지제품 • 바닥용 타일 • 인조석현장갈기 또는 테라조 • 시멘트모르터 위 하드너마감
8. 비 고	가. 거실겸용 부엌 또는 식당겸용 부엌의 경우에는 거실·식당의 재료와 같이 할 수 있다. 나. 욕실·변소로서 주택용복합+새니터리유닛·주택용세면실유닛·주택용화장실유닛 또는 주택용욕실유닛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욕실·변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조립식 칸막이내벽을 설치하는 경우(욕실·변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위의 해당되는 내벽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안내표지판의 규격(제8조 관련)

종 류	표지판규격 (단위: 센티미터)	설 치 높 이 (단위: 미터)
1. 단위유도표지판	가 로: 120 이하 세 로: 80 이하	바닥면에서 표지판 아래끝까지 2.5 이상
2. 단지입구표지판	긴 변: 50 이상 짧은변: 25 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중심까지 1.2 이상
3. 단지종합안내판	가 로: 90 이상 세 로: 60 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중심까지 1.2 이상 1.6 이하
4. 단지내시설표지판	가 로: 40 이상 세 로: 20 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중심까지 0.6 이상

[별표 5]

쓰레기투입시설의 규격 및 마감등의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내부단면적	마 감 상 태 등
1. 낙하로	5층이하의 주택	0.3제곱미터이상	내부면은 쓰레기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6층이상 15층이하의 주택	0.35제곱미터이상	
	16층이상의 주택	0.4제곱미터이상	
2. 저장소	5층이하의 주택	3.0제곱미터이상	가.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벽과 바닥은 방수처리 및 청소용 급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6층이상 15층이하의 주택	3.5제곱미터이상	
	16층이상의 주택	4.0제곱미터이상	
3. 투입구		-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악취가 주거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기밀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배기시설		-	낙하로의 위끝부분에는 동력·풍력 또는 태양열에너지로 작동하는 악취배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주택자재의 치수 및 품질(제17조제1항 관련)

품 목	치 수 및 품 질				
1. 보통벽돌	가. 치수(허용차 및 겉모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 밀리미터)				
	구 분	길 이	너 비	두 계	
	치 수	1 종	210	100	60
		2 종	190	90	57
	허 용 차	±6	±3	±2.5	
	겉 모 양	현저한 비틀림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비 고	위에 규정된 치수외의 것은 KSL4201(보통벽돌)의 치수 및 치수허용차에 의한다.				
	나. 품 질				
	(1) 압축강도: 1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				
	(2) 흡수율: 23퍼센트 이하				
2. 보통블록	가. 치 수				
	(1) 외 부				
	(단위: 밀리미터)				
	구 분	길 이	너 비	두 계	
	치 수	290	190	150	
				100	
	허 용 차	±4	±4	±4	
	(2) 내 부(속빈블록에 한한다)				
구 분	중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횡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단면적(cm ²)	최소너비(cm)	최소지름(cm)		
두께 150mm인 블록	60 이상	7 이상	6 이상		
두께 100mm인 블록	30 이상	5 이상	5 이상		

품 목	치 수 및 품 질																															
	<p>(3) 겉모양: 현저한 비틀림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100kg/cm² 이상</p> <p>(2) 흡 수 율: 16% 이하</p>																															
3. 시멘트벽돌	<p>가. 치 수</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mm)</p> <table border="1" data-bbox="336 710 1216 975">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길 이</th> <th>너 비</th> <th>두 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치 수</td> <td>A 형</td> <td>210</td> <td>100</td> <td>60</td> </tr> <tr> <td>B 형</td> <td>190</td> <td>90</td> <td>57</td> </tr> <tr> <td>C 형</td> <td>190</td> <td>90</td> <td>90</td> </tr> <tr> <td colspan="2">허 용 차</td> <td>+3, -2</td> <td>+3, -2</td> <td>+3, -2</td> </tr> <tr> <td colspan="2">겉 모 양</td> <td colspan="3">현저한 비틀림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p>나. 품 질</p> <p>압축강도: 50kg/cm² 이상</p>				구 분		길 이	너 비	두 께	치 수	A 형	210	100	60	B 형	190	90	57	C 형	190	90	90	허 용 차		+3, -2	+3, -2	+3, -2	겉 모 양		현저한 비틀림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구 분		길 이	너 비	두 께																												
치 수	A 형	210	100	60																												
	B 형	190	90	57																												
	C 형	190	90	90																												
허 용 차		+3, -2	+3, -2	+3, -2																												
겉 모 양		현저한 비틀림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4. 속빈시멘트 블록	<p>가. 치 수</p> <p>(1) 외 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mm)</p> <table border="1" data-bbox="336 1304 1216 1435"> <thead> <tr> <th>구 분</th> <th>길 이</th> <th>높 이</th> <th>두 께</th> </tr> </thead> <tbody> <tr> <td>치 수</td> <td>390</td> <td>190</td> <td>190, 150, 120, 100</td> </tr> <tr> <td>허 용 차</td> <td>±2</td> <td>±3</td> <td>±2</td> </tr> </tbody> </table>				구 분	길 이	높 이	두 께	치 수	390	190	190, 150, 120, 100	허 용 차	±2	±3	±2																
구 분	길 이	높 이	두 께																													
치 수	390	190	190, 150, 120, 100																													
허 용 차	±2	±3	±2																													

품 목	치 수 및 품 질					
	(2) 내 부(속빈블록에 한한다)					
	구 분	속 빈 부 분			최소 살두께	
		중근을 삼입하는 속빈부분	횡근을 삼입 하는 속빈부 분	조적후 외 부에 나타 나는 부분 (mm)	기타부분 (mm)	
		단면적 (cm ²)	최소너비 (cm)	최소지름 (cm)		
	두께 150mm 이상 의 시멘트블록	60 이상	7 이상	6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20mm인 시멘트블록	42 이상	6 이상	6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mm인 시멘트블록	30 이상	5 이상	5 이상	20 이상	20 이상
<p>(3) 겉모양: 현저한 비틀림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 질</p> <p>압축강도: 40kg/cm² 이상</p>						
5. 보통시멘트 기와	가. 치 수 (단위: mm)					
	구 분	길 이	너 비	주요부분 두께	기타부분 두께	
	치 수	340	300	15	7 이상	
	허 용 차	±3	±3	+3, -1	-	
	겉 모 양	표면 및 뒷면의 모양은 제한하지 아니하나 뒷면에 걸침턱을 두어야 하며, 현저한 비틀림과 굽힘 또는 해로운 균열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p>나. 품 질</p> <p>(1) 휨과괴 하중: 80kg 이상</p> <p>(2) 흡수율: 12% 이하</p>						

품 목	치 수 및 품 질		
6. 콘크리트 조립식부재	벽 판	가. 치 수 (1) 치수: 설계치수에 의한다. (2) 허용차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mm)</div>	
		구분	허 용 차
		높 이	±5
		너 비	±3
		두 계	+ 5, -2
		대 각 선 치 수 차	+10, -2
		보 울 트 구 명 위 치	±2
		(3) 겉모양: 구조상 또는 마감상 해로운 비틀림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품 질 (1) 압축강도: 210kg/cm ² 이상 (2) 골재의 염분함유량: 0.02% 이하	
			바닥판
구분	허 용 차		
길 이	±7		
너 비	±3		
두 계	+ 5, -2		
대 각 선 치 수 차	+10, -2		
보 울 트 구 명 위 치	±3		
(3) 겉모양: 구조상 또는 마감상 해로운 비틀림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품 목	치 수 및 품 질	
	나. 품 질 (1) 압축강도: 210kg/cm ² 이상 (2) 휨강도: 설계강도 이상 (3) 골재의 염분함유량: 0.02% 이하	
지붕판	가. 치 수 (1) 치수: 설계치수에 의한다. (2) 허용차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mm)</div>	
	구분	허 용 차
	길 이	±5
	너 비	±3
	두 계	±5
	대 각 선 치 수 차	+10, -2
	보 울 트 구 멍 위 치	±2
	(3) 겉모양: 구조상 또는 마감상 해로운 비틀림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품 질 (1) 압축강도: 300kg/cm ² 이상 (2) 휨강도: 설계강도 이상 (3) 골재의 염분함유량: 0.02% 이하	
	기 등	가. 치 수 (1) 치수: 설계치수에 의한다. (2) 허용차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mm)</div>
구분		허 용 차
높 이		±5
너 비		±3
보 울 트 위 치		±2

품 목	치 수 및 품 질	
	<p>(3) 겉모양: 구조상 또는 마감상 해로운 비틀림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210kg/cm² 이상</p> <p>(2) 골재의 염분함유량: 0.02% 이하</p>	
보	<p>가. 치 수</p> <p>(1) 치수: 설계치수에 의한다.</p> <p>(2) 허용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mm)</p>	
	구분	허 용 차
	길 이	±5
	너 비 · 높 이	±3
	보 울 트 위 치	±2
	<p>(3) 겉모양: 구조상 또는 마감상 해로운 비틀림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210kg/cm² 이상</p> <p>(2) 휨강도: 설계강도 이상</p> <p>(3) 골재의 염분함유량: 0.02% 이하</p>	
계 단	<p>가. 치 수</p> <p>(1) 치수: 설계치수에 의한다.</p> <p>(2) 허용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mm)</p>	
	구분	허 용 차
	길 이	±7
	단 높 이 및 너 비	±3
	보 울 트 구 명 위 치	±2

품 목	치 수 및 품 질			
	<p>(3) 겉모양: 구조상 또는 마감상 해로운 비틀림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210kg/cm² 이상</p> <p>(2) 골재의 염분함유량: 0.02% 이하</p>			
	기 타	<p>가. 치 수</p> <p>(1) 치수: 설계치수에 의한다.</p> <p>(2) 허용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mm)</p>		
	구분		허 용 차	
	길	이	±7	
	너	비	±3	
	두	께	+ 5, -2	
	대 각 선 치 수 차		+10, -2	
<p>(3) 겉모양: 구조상 또는 마감상 해로운 비틀림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210kg/cm² 이상</p> <p style="padding-left: 20px;">(경량콘크리트부재는 180kg/cm² 이상)</p> <p>(2) 골재의 염분함유량: 0.02% 이하</p>				
7. 목재창호 및 틀	<p>가. 치 수</p> <p>(1) 틀 재</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mm)</p>			
두		허 용 차	너 비	허 용 차
30		+2, -1	90	+2, -1
40			100, 120	+3, -1
45			150, 180	+4, -1
50			210, 240	+5, -1
60			270, 300	+6, -1

품 목	치 수 및 품 질				
	(2) 플랫쉬문, 양판문 (단위: mm)				
	치 수			허 용 차	
	문 두 계	합 판 두 계	문 두 계	대변의 안목치수차	
	30, 33, 36, 40, 45	4.5 내지 6	±1	2 이하	
	(3) 살문, 비닐살문, 망사문 (단위: mm)				
	구 분	옆 두 계	너 비	허 용 차	대변의 안목치수차
	창	30 또는 33	옆 두계의 2배 이상	±1	2 이하
	문	25 또는 36			
	(4) 겉모양: 갈라짐·휨·비틀림 등이 극히 경미하여야 하며, 양측면 및 앞면에는 웅이·흠집·긁질박이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품 질 함수율: 18% 이하				
	8. 콘크리트 창호 및 틀	가. 치 수			
(1) 틀 재 (단위: mm)					
구 분		너 비		두 계	
		치 수	허 용 차	치 수	허 용 차
창 틀		100, 110	+2	42, 45	+3
		150, 220	-1	50	-2
문 틀		100, 110	+2	42, 45	+3
		150,	-1	50	-2
(2) 겉모양: 표면 마무리는 치밀하고 평활하며, 균열·탈락 등 흠이 없고 비틀림이 경미하여야 한다. 나. 품 질 휨강도: 30kg/cm ² 이상					

품 목	치 수 및 품 질				
9. 알루미늄 창호 및 틀	가. 치 수 (단위: mm)				
	부재의 주부분 두께		대변의 안목 치수차		
	1.1 이상		2.0 이하		
	결 모 양	압출형재 및 판은 현저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창틀 및 장치부분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고, 보임면은 평활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나. 품 질 틀재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및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철제창호 및 틀	치 수 (단위: mm)				
	구 분	주재의 주부분 두께		대변의 안목 치수차	
		두께	허용차		
	창문틀 창문 합살	1.6 이상 1.2 이상 2.3 이상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서 정하는 허용차에 따른다.		2 이하
	결 모 양	창호 및 틀의 결모양은 적절한 녹막이가 되고 갈라짐·찢김·요철 등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접합은 견고하고 틈이 없고 턱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보임부분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1. 합성수지 창호 및 틀	가. 치 수 (단위: mm)				
	너 비		두께 (최소치수)	대변의 안목치수	
	치 수	허용차			
	30, 36, 39, 40, 66, 77, 84, 93, 100, 213		±1.0	1.0 이상	2 이하

품 목	치 수 및 품 질				
	겉 모 양	창호 및 틀의 겉모양은 갈라짐·비틀림·찢김·요철 등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창틀 및 창짝부재의 접합은 정확·견고하고 용접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하여 매끈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나. 품 질 (1) 인장응력: 400kg/cm ² 이상 (2) 충격강도: 20kg/cm ² 이상				
12. 고압벽돌	가. 치 수 (단위: mm)				
	구 분		길 이	너 비	두께
	치 수	표 준 형	190	90	57
		재 래 형	240	115	71
	허 용 차		±3	±3	±3
	겉 모 양		현저한 비틀림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나. 품 질 (1) 압축강도: 75kg/cm ² 이상 (2) 흡수율: 20% 이하					
13. 고압블록	가. 치 수 (단위: mm)				
	구 분		길 이	높 이	두께
	치 수	표 준 형	390	190	190, 150, 100
	허 용 차		±3	±3	±3
	겉 모 양		현저한 비틀림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나. 품 질 (1) 압축강도: 75kg/cm ² 이상 (2) 흡수율: 20% 이하				

품 목	치 수 및 품 질				
14. 토공벽돌	가. 치 수 시멘트벽돌의 치수와 같다. 나. 품 질 압축강도: 70kg/cm ² 이상				
15. 토공블록	가. 치 수 속빈시멘트블록의 치수와 같다. 나. 품 질 압축강도: 50kg/cm ² 이상				
16. 토공기와	가. 치 수 보통시멘트기와의 치수와 같다. 나. 품 질 (1) 휨파괴 하중: 90kg 이상 (2) 흡수율: 12% 이하				
17. 가압시멘트 판기와	가. 치 수 (단위: mm)				
	구	분	길 이	너 비	
	치 수	1 종	425	337	12
		2 종	364	357	11
		3 종	364	337	12
		4 종	364	355	12
		5 종	315	305	11
허 용 차	±3		±3	+3, -1	
결 모 양	갈렘·잔구멍·뒤틀림·압축·빠짐 등의 흠이 없어야 하며 표면처리의 반점·칠얼룩 및 백화가 없고 보임면은 완전히 칠하여 벗겨짐·부풀음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품 질 (1) 휨파괴: 하중 90kg 이상 (2) 흡수율: 10% 이하					

〈별표 7〉

주택자재품질 검사기준(제21조 관련)

품 목	검 사 항 목 및 방 법
공통사항	<p>가. 검사시료의 채취: KS A3151(랜덤샘플링방법)에 의한다.</p> <p>나. 치수(허용차 및 겉모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KS B5246(금속제 끝은자)의 최소눈금 1mm 이하의 끝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측정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p> <p>다. 합격판정: 검사시료 전부가 별표 6의 주택자재의 치수 및 품질에 합격하여야 그 로트가 합격한 것으로 한다.</p> <p>라. 자체품질관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품질관리시험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로트의 크기를 2배로 할 수 있다.</p>
1. 보통벽돌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KS L4201(보통벽돌)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p> <p>(2) 흡수율: KS L420(보통벽돌)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1만매당 5매</p>
2. 보통블록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보통벽돌의 압축강도의 시험방법과 같다.</p> <p>(2) 흡수율: 보통벽돌의 흡수율의 시험방법과 같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5천매당 5매</p>
3. 시멘트벽돌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압축강도: KS F4004(시멘트벽돌)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1만매당 5매</p>
4. 속빈시멘트블록	<p>가. 치 수: KS F4002(속빈시멘트블록)의 모양 및 치수와 공통사항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압축강도: KS F4002(속빈시멘트블록)의 전 단면적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5천매당 5매</p>

품 목	검 사 항 목 및 방 법
5. 보통시멘트 기와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1) 휨파괴 하중: KS F4003(보통시멘트기와)의 휨시험방법에 의한다.</p> <p>(2) 흡수율: KS F4003(보통시멘트기와)의 흡수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1천매당 5매</p>
6. 콘크리트조 립식부재 (벽판·바닥 판·지붕판· 기둥보·계단 등)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KS F2405(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사용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한다.</p> <p>(2) 휨강도(바닥판, 지붕판, 보에 한한다): KS F2273(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분의 성능시험방법)의 단순 휨 시험방법에 의한다.</p> <p>(3) 골재의 염분함유량: KS F2515(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사용잔골재에 대하여 시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p> <p>(1) 치수검사: 제품 200개당 3개</p> <p>(2) 압축강도시험: 사용콘크리트 150㎡당 공시체 3개</p> <p>(3) 휨강도시험: 제품 500개당 3개</p> <p>(4) 골재의 염분함유량 시험: 사용골재 50톤당 10킬로그램</p>
7. 목재창호 및 틀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흡수율: 흡수율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KS F3108(창문의 목재 틀재)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200매당 3매</p>
8. 콘크리트창 호 및 틀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휨강도: KS F2407(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되, 공시체는 창호틀의 제작시방에 의하여 단면 15cm×4.5cm, 길이 50cm로 제작한 재령 4주의 것으로 하고, 지간은 45cm로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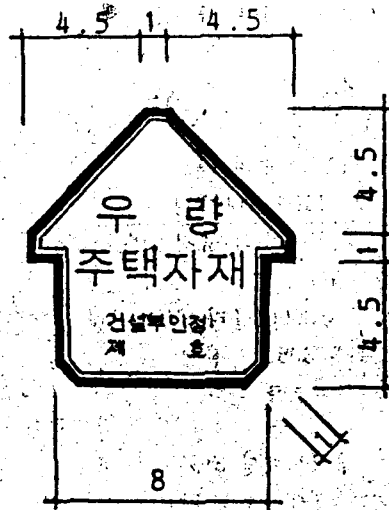
품 목	검 사 항 목 및 방 법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p> <p>(1) 치수검사: 제품 200매당 3매</p> <p>(2) 휨강도시험: 사용콘크리트 100m³당 공시체 3개</p>
<p>9. 알루미늄 창호 및 틀</p>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틀재의 재질: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200매당 3매</p>
<p>10. 철제창호 및 틀</p>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200매당 3매</p>
<p>11. 합성수지 창호 및 틀</p>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1) 인장응력: KS M3006(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에 의한다.</p> <p>(2) 충격강도: KS M3056(경질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편의 형상은 1호 시험편으로 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p> <p>(1) 치수검사: 제품 200매당 3매</p> <p>(2) 인장응력시험: 검사 1회당 시험편 5개</p> <p>(3) 충격강도시험: 검사 1회당 시험편 10개</p>
<p>12. 고압벽돌</p>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KS L4204(규회벽돌)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p> <p>(2) 흡수율: KS L4201(보통벽돌)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1만매당 5매</p>
<p>13. 고압블록</p>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p> <p>(1) 압축강도: 고압벽돌의 압축강도의 시험방법과 같다.</p> <p>(2) 흡수율: 고압벽돌의 흡수율의 시험방법과 같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5천매당 5매</p>
<p>14. 토공벽돌</p>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품 목	검 사 항 목 및 방 법
	<p>나. 품 질 압축강도: KS F4004(시멘트벽돌)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하되, 캡핑은 토공모르터를 사용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1만매당 5매</p>
15. 토공블록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 압축강도: KS F4002(속빈시멘트블록)의 전 단면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되, 캡핑은 토공모르터를 사용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5천매당 5매</p>
16. 토공기와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 (1) 휨파괴하중: KS F4003(보통시멘트판기와)의 휨 시험방법에 의한다. (2) 흡수율: KS F4003(보통시멘트기와)의 흡수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1천매당 5매</p>
17. 가압시멘트 판기와	<p>가. 치 수: 공통사항의 치수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 질 (1) 휨파괴하중: KS F4029(가압시멘트판기와)의 휨시험방법에 의한다. (2) 흡수율: KS F4029(가압시멘트판기와)의 흡수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 1천매당 5매</p>

<별표 8>

우량주택자재 인정의 표시(제26조 관련)

1. 도안의 모형



2. 도안의 요령

가. 모형의 크기는 주택자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나. 모형의 색상은 주택자재의 종류에 따라 선택한다.

다. 외곽 굵은선의 두께는 0.45로 하고, 내부 가는선과의 간격은 0.15로 한다.

라. 문자 “우량주택자재”의 서체는 태고딕체로 하고, 문자의 크기(높이)는 1.5로 한다.

마. 문자 “건설부인정 제 호”의 서체는 고딕체로 하고, 문자의 크기(높이)는 0.6으로 한다.

※위의 수치는 모형의 너비와 높이를 각각 10으로 한 비례치임.

주택자재생산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① 상호 또는 성명		
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인	④ 영업소 소재지	(전화)	
⑤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			
⑥ 자본금 또는 재산			
⑦ 주요 시설 및 장비			
<p>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귀하</p>			
구비서류			수 수 료
			1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당해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보유명세서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 제정이유 ▶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근로자주택과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주택단지안의 도로·주차장 등의 부대시설과 탁아소·사회복지관·아파트형 공장 등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일반주택의 기준과는 따로 정함으로써 해당 주택의 특성에 적합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조).
- 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제6조제3항).
- 다.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배수로 및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비탈면의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하고, 주택 등의 건축물은 비탈면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수해를 방지하도록 함(제7조).
- 라. 대지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간선시설(진입도로·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대지조성사업계획시 대지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선시설을 확보하도록 함(제12조).
- 마. 우량주택자재의 인정기준과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건설부장관의 우량주택자재로 인정한 주택자재에 대하여는 우량주택자재인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주택자재의 개발 및 규격화를 촉진하도록 함(제23조 내지 제27조).